

2008. 7. 10 ~ 7. 21

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2008년도 거창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의안번호 제2008- 26호>

[2008년도 거창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6.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7. 04

2. 예산안 규모(군전체) - (사업명세서 P3)

가.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 정 액 (본예산)	증 감	증감률
계	349,796,043	302,032,596	47,763,447	15.8%
일반회계	292,355,838	247,146,009	45,209,829	18.3
특별회계	57,440,205	54,886,587	2,553,618	4.6

-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77억 6,344만 7천원이 증액(15.8%)된 3,497억 9,60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예산안은 2,923억 5,58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52억 982만 9천원이 증액(18.3%)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안은 574억 4,02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5,361만 8천원이 증액(4.6%)되었음.

나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P5)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21,470,991	275,786,706	45,684,285	16.57%
지	방 세 수 입	15,091,441	13,886,399	1,205,042	8.68
	지 방 세	15,091,441	13,886,399	1,205,042	8.68
	보 통 세	13,999,828	12,794,786	1,205,042	9.42
	목 적 세	889,336	889,336	0	0
	지난년도수입	202,277	202,277	0	0
세	외 수 입	30,433,020	30,663,228	△230,208	△0.75
	경상적세외수입	6,417,746	6,381,746	36,000	0.56
	재산임대수입	110,020	110,020	0	0
	사 용 료 수 입	728,251	692,251	36,000	5.20
	수 수 료 수 입	954,400	954,400	0	0
	사 업 수 입	318,100	318,100	0	0
	징수교부금수입	376,974	376,974	0	0
	이 자 수 입	3,930,001	3,930,001	0	0
	임시적세외수입	24,015,274	24,281,482	△266,208	△1.1
	재산매각수입	50,000	50,000	0	0
	순세계잉여금	19,906,132	21,061,314	△1,155,182	△5.48
	이 월 금	1,099,664	250,000	849,664	339.87
	전 입 금	1,433,543	1,427,293	6,250	0.44
	융자금원금수입	230,115	230,115	0	0
	부 담 금	269,920	244,960	24,960	10.19
	잡 수 입	925,900	917,800	8,100	0.88
지	방 교 부 세	157,525,046	124,345,526	33,179,520	26.68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910,000	3,910,000	0	0
	보 조 금	112,411,484	100,881,553	11,529,931	11.4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100,000	2,100,000	0	0

다. 일반회계(세출) - (사업명세서 P1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321,470,991	275,786,706	45,684,285	16.57%
총무위원회	144,723,376	130,907,981	13,815,395	10.5
기획감사실	12,046,458	9,991,035	2,055,423	20.5
읍 면	9,563,828	7,159,896	2,403,932	33.5
종합민원실	709,154	751,264	△42,110	△5.6
행 정 과	37,202,811	37,150,832	51,979	0.1
재 무 과	3,374,993	2,907,100	467,893	16.1
주민생활지원과	13,276,377	12,838,149	438,228	3.4
사회복지과	30,054,159	28,645,590	1,408,569	4.9
문화관광과	22,273,523	19,711,404	2,562,119	13.0
전략사업추진단	9,569,490	5,422,706	4,146,784	76.4
보 건 소	4,961,173	4,568,265	392,908	8.6
교육문화센터	1,219,805	1,290,272	△70,467	△5.4
수승대관리사무소	471,605	471,468	137	0.1
의회운영위원회	1,075,154	1,110,383	△35,229	△3.1
산업건설위원회	175,672,461	143,768,342	31,904,119	22.1

-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447억 2,33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138억 1,539만 5천원(10.5%)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3. 검토의견

■ 기획감사실(사업명세서 P67 ~ 77)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218,032	183,018	35,014	19.1%
국고보조금	63,730	62,330	1,400	2.2
도비보조금등	154,302	120,688	33,614	27.9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1만 4천원이 증액 (19.1%)된 2억 1,80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2,046,458	9,991,035	2,055,423	20.6%
군정기획조정	4,613,936	3,291,705	1,322,231	40.2
정보화	1,364,775	1,405,787	△41,012	△2.9
행정운영경비	77,241	83,770	△6,529	△7.8
재무활동	3,360,733	2,580,000	780,733	30.3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5,542만 3천원이 증액 (20.6%)된 120억 4,64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군정홍보탑 설치 사업비 : △7천만원(명세서 p71)

- 거창군의 주요 관문인 대동리 개봉광장 주변에 관광객 등 거창을 찾는 외부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 군정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 6억원(명세서 p71)

-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6억원 중 5억원은 거창을 세계적인 승강기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발전시켜 교육도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 승강기 대학 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용역비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간지 광고료 : 8,800천원(명세서 p71)

- 당초예산에서 52,800천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서 8,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간지 광고료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배상금 등(감정비 및 증인여비) : 8천만원(명세서 p73)

- 북상면 산수 산37-7일대에 규석광산 채광인가(풍원광산)를 받은 후 채광목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거창군에서 장마철 재난을 이유로 적지 복구 통보 후 행정대집행으로 적지 복구 강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임.

◇ PC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 △2,430천원(명세서 p75)

◇ 의회 CCTV 네트워크방송 시스템 구입 : △105,790천원(명세서 p76)

-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PC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종합민원실(사업명세서 P79~84)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216,000	239,040	△23,040	△9.6
국고보조금	216,000	239,040	△23,040	△9.6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04만원이 감액(△9.6)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709,154	751,264	△42,110	△5.6%
고객맞춤 민원행정구현	115,343	119,947	△4,604	△3.8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	455,894	467,756	△11,862	△2.5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88,036	107,791	△19,755	△18.3
행정운영경비	49,881	55,770	△5,889	△10.6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11만원이 감액(△5.6%)된 7억 91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감액된 사유는 예산절감 10% 추진계획에 의거 감액한 것임.

■ 행정과(사업명세서 P85~94)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3,119,565	363,565	2,756,000	758.0%
국고보조금	2,716,287	20,287	2,696,000	13,289.3
도비보조금등	403,278	343,278	60,000	17.4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5,600만원이 증액(758.0%)된 31억 1,95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37,202,811	37,150,832	51,979	0.1%
행정의 효율성 강화	3,976,352	3,282,202	694,150	21.1
행정운영경비	33,226,459	33,868,630	△642,171	△1.9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97만 9천원이 증액(0.1%)된 372억 28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 150,000천원(명세서 P87)

◇ 경남 및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 부담금 : 70,000천원(명세서 P87)

- 교육환경이 교육점수제에서 이수 시간제로 변화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240,000천원(명세서 P92)

-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읍면별 1개 마을 선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 기타 예산편성 감액 사유는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에 의한 것임.

■ 재무과 소관(사업명세서 P95~100)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95,724,212	161,861,314	33,862,898	20.9%
지방세수입	15,091,441	13,886,399	1,205,042	8.7
세외수입	18,976,725	19,719,389	△742,664	△3.8
지방교부세	157,525,046	124,345,526	33,179,520	26.7
도비보조금등	221,000	0	221,000	100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8억 6,289만 8천원이 증액(20.9%)된 1,957억 2,42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3,374,993	2,907,100	467,893	16.1%
지주재원확충과 건전재정운영	445,160	453,438	△8,278	△1.8
재산관리	2,711,705	2,251,542	460,163	20.4
행정운영경비	70,128	75,120	△4,992	△6.6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789만 3천원이 증액(16.1%)된 33억 7,49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토지매입비 : 370,000천원(명세서 p99)

-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당 5억원 이상, 토지매입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편성된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웅양면사무소 휴식공간 조성 등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 기타 예산편성 사유는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에 의한 것임.

■ 주민생활지원과(사업명세서 P101~11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9,570,684	9,346,059	224,625	2.4%
국고보조금	8,379,223	8,215,292	163,931	2.0
도비보조금등	1,191,461	1,130,767	60,694	5.4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462만 5천원이 증액 (2.4%)된 95억 7,0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2,683,402	12,251,544	431,858	3.5%
국민기초생활보장	11,336,944	10,915,006	421,938	3.9
고용촉진 및 안정	277,930	337,580	△59,650	△17.7
주민복지 증진	415,493	342,785	72,708	21.2
행정운영경비	69,492	78,880	△9,388	△11.9
재무활동	583,543	577,293	6,250	1.1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185만 8천원이 증액 (3.5%)된 126억 8,34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민생활지원 : 2억원(명세서 p103~105)

- 2007년 주민서비스 우수 자치단체 시상금으로 행정안전부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자원조사 및 종합자료집 발간(1천만원), 주민서비스 업무 혁신 견학(2천만원), 민·관협의체 홈페이지 구축(3천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2천1백만원), 민관협의체 사무실 정비(2천만원) 등 지역내 주민생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 ◇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등 기타 사업비는 당초 가내 시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서 예산을 증감하여 조정 편성한 것임.

■ 사회복지과(사업명세서 P113~136)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7,047,558	16,502,448	545,110	3.3%
국고보조금	12,731,100	12,257,741	473,359	3.9
도비보조금등	4,316,458	4,244,707	71,751	1.7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511만원이 증액(3.3%)된 170억 4,75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30,054,159	28,645,590	1,408,569	4.9%
노인복지증진	16,318,411	16,173,872	144,539	0.9
청소년 건전육성	800,051	803,411	△3,360	△0.4
양성평등추진 및 건강가정 육성	721,469	738,615	△17,146	△2.3
장애인 복지증진	3,422,790	3,203,256	219,534	6.9
아동복지증진	8,596,441	7,527,440	1,069,001	14.2
행정운영경비	44,997	48,996	△3,999	△8.2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856만 9천원이 증액(4.9%)된 300억 5,41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노인교통수당 지원 : △929,796천원(명세서 p115)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70세 이상 → 65세 이상 확대)는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 : △233,793천원(명세서 p118)

-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임.

◇ 노인 복지시설 운영 : 337,242천원(명세서 p1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 7. 1일부터 시행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가, 자치단체 부담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삶의 쉼터 운영 : 221,940천원(명세서 p120)

◇ 장애인복지관 운영 : 5,125천원(명세서 p129)

- 거창군 삶의 쉼터는 2008년 2월 19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위·수탁협약서 제7조(비용부담 및 운영비 지원)제1항에서 갑은 삶의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협약 체결한 사유 설명과, 삶의 쉼터 운영에 대한 그 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166,400천원(명세서 p121)

- 도비지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0,000천원(명세서 p132)

- 신규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비를 삭감하였다고 하였는데 확보하지 못한 사유 설명과 준비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관광과 소관(사업명세서 P137~147)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1,287,940	9,795,695	1,492,245	15.2%
국고보조금	5,436,003	5,326,805	109,198	2.0
도비보조금등	5,851,937	4,468,890	1,383,047	30.9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9,224만 5천원이 증액 (15.2%)된 112억 8,79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22,715,128	20,152,872	2,562,256	12.7
문화예술진흥	2,887,159	2,518,000	369,159	14.7
관광진흥	3,692,921	2,259,471	1,433,450	63.4
전통문화 보존전승	2,745,709	2,381,623	364,086	15.3
체육진흥	12,878,350	12,478,550	399,800	3.2
행정운영경비	39,384	43,760	△4,376	△10.0
수송대관리사무소	471,605	471,468	137	0.02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6,225만 6천원이 증액 (12.7%)된 227억 1,5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거창국제연극제 관객개발, 문화예술행사 지원 : 1억원(명세서 p139)

◇ 사랑티켓 운영 지원 : △1억원(명세서 p140)

○ 거창국제연극제의 사랑티켓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서 1 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 사랑티켓 제도가 폐지되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 사랑티켓 운영지원 예산 1억원을 삭감하고 관객개발 등 지원 사업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추경예산 1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 2억원(명세서 p140)**

- 당초예산에서 도비 3억원, 군비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에서 군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광펜션단지 조성사업 : 5억원(명세서 P142)**

- 수송대 관광지내 펜션 신축에 따른 예산액이 관광펜션 단지조성 468,400천원, 실시설계비 28,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00천원 등 총 500,000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시·군·자치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관광펜션단지 조성사업도 건물 신축에 해당되므로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사업 : 2,387,374천원(명세서 P147)

- 당초예산에서 2,424,750천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예산과다 편성 사유로 △337,375천원을 감액한 2,087,37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금액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략사업추진단(사업명세서 P149~157)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국고보조금등	70,900	50,000	20,900	41.8%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90만원이 증액(41.8%)된 7,09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9,569,490	5,422,706	4,146,784	76.5%
교육지원	6,135,919	2,852,000	3,283,919	115.1
평생학습지원	919,660	499,960	419,700	83.9
인구증가	334,760	329,760	5,000	1.5
산업투자유치	442,885	0	442,885	100
행정운영경비	36,266	40,986	△4,720	△11.5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4,678만 4천원이 증액(76.5%)된 95억 6,94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제화 교육 : 1,370,000천원(명세서 p151~153)

- 국제화 교육지원 사업비로 계상된 1,370,000천원은 2008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 교육여건 개선 : 1,913,919천원(명세서 p153~154)

- 면단위 야간통학버스 운행비 지원비 56,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야간자율 학습 후 거창읍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귀가시키기 위한 사업비임. 15,000천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초중고 지원 사업비 524,719천원, 거창여자중학교급식소 건립지원 4억원, 초등학교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750,000천원은 군비지원사업임. 구체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 2억원(명세서 p155)

-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거창군 관내 초등학교 수는 17개교인데 학교당 각각 5천만원씩 4개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 투자 유치 : 442,885천원(명세서 p155)

◇ 기업 유치 : 267,615천원(명세서 p156)

-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및 기업유치를 위한 군 시책 사업임.

■ 보건소(사업명세서 P159~170)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941,362	1,911,831	29,531	1.5%
국고보조금	1,309,401	1,293,735	15,666	1.2
도비보조금등	631,961	618,096	13,865	2.2

-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53만 1천원이 증액(1.5%) 된 19억 4,1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4,961,173	4,568,265	392,908	8.6%
군민건강증진	3,985,135	3,564,211	420,924	11.8
행정운영경비	976,038	1,004,054	△28,016	△2.8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290만 8천원이 증액 (8.6%)된 49억 6,11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 183,228천원(명세서 p162)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토지를 매입하여 보건소내 정신 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한 보건소 증축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증감 예산액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 교육문화센터(사업명세서 P171~17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1,219,805	1,290,272	△70,467	△5.5
교육문화 도시육성	847,420	918,960	△71,540	△7.8
행정운영경비	372,385	371,312	1,073	0.3

○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46만 7천원이 감액 (△5.5%)된 12억 1,98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감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설명서에 있어 별다른 검토 의견 없음